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한외국인에게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통해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하거나 민원에 관한 통·번역을 지원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민간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개정(’23. 10. 2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민간 위탁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위탁할 수 있는 민간 단체 또는 법인의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 및 위탁 기간 등을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
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
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민원 안내·상담
2.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외국인 관련 민원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
3. 상담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4. 전화상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5. 안내센터 민원 품질관리,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의 구비 여부
2. 재정 건진성
3.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구비 여부
4. 위탁 업무에 대한 전문성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의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7조(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민원 안내·상담 2.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외국인 관련 민원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 3. 상담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4. 전화상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5. 안내센터 민원 품질관리,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법인 또는 단체를 선

정한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
력의 구비 여부

2. 재정 건전성

3.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
과 장비의 구비 여부

4. 위탁 업무에 대한 전문성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는 법인 또는 단체 및 위탁업
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의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종합안내
센터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세
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4116